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6
--------	--------	----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심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를 승인하는등 현행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안 제6조제2항제1호).
- 동일 내용의 조항 변경 사항임.

□ 개 정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법률 제4,853호, 1994.12.31.)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0조의 2(대통령령 제14,498호, 1994.12.31.)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 자료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조사의뢰 및 동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